



의안번호	제호
회의 연월일	2020. . . (제회)

의결사항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출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보수를 2019년 보수 보다 2.8퍼센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 완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 호, 2020.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1	1,642,800	-	-	-
2	1,688,000	-	-	-
3	1,769,000	-	-	-
4	1,854,800	-	-	-
5	1,941,500	-	-	-
6	2,030,000	-	-	-
7	2,114,800	-	-	-
8	2,196,500	-	-	-
9	2,274,800	-	-	-
10	2,350,000	-	-	-
11	2,421,900	-	-	-
12	2,493,100	-	-	-
13	2,561,600	2,702,800	-	-
14	2,628,000	2,771,900	-	-
15	2,691,500	2,838,400	-	-
16	2,752,900	2,902,500	-	-
17	2,813,100	2,962,300	-	-
18	2,869,000	3,020,500	-	-
19	2,924,000	3,076,100	3,386,300	-
20	2,976,400	3,129,300	3,443,400	-
21	3,025,700	3,180,100	3,497,900	-
22	3,073,300	3,228,800	3,549,400	-
23	3,118,500	3,275,200	3,599,100	-
24	3,162,000	3,319,900	3,646,300	3,904,200
25	3,203,300	3,362,400	3,691,000	3,950,900
26	3,240,800	3,403,600	3,733,900	3,993,500
27	3,273,000	3,437,900	3,770,200	4,030,000
28	3,304,000	3,471,000	3,803,900	4,065,200
29	3,334,000	3,502,200	3,836,600	4,098,400
30	3,363,200	3,532,500	3,867,800	4,129,800
31	3,391,700	3,561,900	3,897,100	4,159,6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과	
연 락 처	(02) 3150 - 1226